

# 심사보고서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# 심 사 보 고 서

의안 번호	843
----------	-----

2021. 10. 14.(목)  
행정문화위원회

## 1. 심사경과

가. 제 출 자 : 충청북도지사

나. 제출일자 : 2021년 10월 1일

다. 회부일자 : 2021년 10월 5일

라. 상정일자 : 2021년 10월 14일

- 제394회 충청북도의회 임시회 제1차 행정문화위원회 : 상정·의결

마. 주요내용

- 제안설명, 검토보고, 질의답변, 심사의결(원안가결)

## 2. 제안 설명 요지

(제안설명자 : 오세동 행정국장)

가. 제안사유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」 제14조(특별휴가) 제1항의 규정 중 오자를 정정하고,
- 제14조제4항의 소속직원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자 함.

## 나. 주요내용

### ○ 오자 수정(안 제14조 제1항 관련)

- “별표 3”을 “별표 4”로 정정 \* 경조사별 휴가일수표
- 별표 4 관련조문 정정

### ○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부여일수 확대(안 제14조 제4항)

-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공무원 : 15일 → 20일
- 재직기간 30년 이상 공무원 : 15일 → 20일

## 3. 검토보고 요지(수석전문위원 : 남범우)

### ○ 이번 공유재산관리계획안 중

- 이 개정조례안은 직원의 사기진작과 활기찬 직장분위기 조성을 위해 재직기간별 장기재직휴가 일수를 조정하고 규정 중 오자를 정정하는 것으로 특별한 이견이 없음.

## 4. 질의 및 답변요지 : “생략”

## 5. 토 론 요 지 : “생략”

## 6. 심 사 결 과 : “원안가결”

## 7. 소 수 의 견 요 지 : “없음”

## 8. 기타 필요한 사항 : “없음”

## 9. 심사보고서 첨부서류

- 「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」

## 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개정조례안

충청북도 지방공무원 복무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14조제1항 중 “별표 3”을 “별표 4”로 한다.

제14조제4항 중 “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15일”을 “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은 20일”로, “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15일”을 “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20일”로 한다.

별표 4 중 “제13조제1항”을 “제14조제1항”으로 한다.

### 부 칙

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## 신·구조문 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-----            ----- <u>별표 3에 따른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.</p> <p>②~③생략</p> <p>④ ----- <u>재직기간이 10년</u>  <u>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</u>은 10  <u>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</u>  <u>원은 15일, 30년 이상 재직한 공</u>  <u>무원은 15일의 휴가</u>를 받을 수            있으며, -----            --.</p> <p>⑤~⑧생략</p>	<p>제14조(특별휴가) ① -----            ----- <u>별표 4에 따른</u>-----            -----            .</p> <p>②~③생략</p> <p>④ ----- <u>재직기간이 10년</u>  <u>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</u>은 10  <u>일, 20년 이상 30년 미만인 공무</u>  <u>원은 20일, 30년 이상 재직한 공</u>  <u>무원은 20일의 휴가</u>를 받을 수            있으며, -----            --.</p> <p>⑤~⑧생략</p>

## 관계법령 발취

### □ 지방공무원법

제59조(위임규정) 공무원의 복무에 필요한 사항은 이 법에서 규정하는 것 외에는 대통령령 또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다.

### 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

제7조의7(특별휴가) ① 공무원의 특별휴가는 이 영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. 다만, 이 영에서 정하지 아니하는 사항은 지방자치단체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.

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1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주어야 한다.